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2년 대한언어학회 가을 학술대회

- 주제: 언어학 연구의 실제적 활용 - 이론, 교육 및 표기법을 중심으로
- 장소: 광주 전남대학교 진리관(경영대학과 인문대 1호관 사이)
- 일시: 2012. 10. 20(토) 09:00 ~ 18:00
- 등록비: 1만원(점심 및 프로시딩스 포함)
- 주최: 대한언어학회
- 주관: 전남대학교 영어교육과
- 후원: 한국연구재단, 전남대학교

- * 이 발표논문집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자발간 되었음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규범적측면에서 본 로마자표기법의 제문제

정경일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1. 서론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하 ‘로마자표기법’으로 표기)은 매우 불행한 규범이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어하여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상응한 제재를 통하여 규범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로마자표기법은 이러한 일반적 원리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2000년 7월 개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로마자표기법으로서 4번째로 만들어진 것이다. 처음 제정된 뒤로 50여년의 역사 속에 4번째의 개정을 맞으면서도, 로마자표기법은 여전히 사회적 공적 규범으로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개정고시 후 13여년을 맞고 있는 현재도 로마자표기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재개정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로마자표기는 일정한 규범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정도로 혼란스러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규범을 놓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질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견해나 (최경봉.2012) 인명이나 단체명 등 인격권을 가진 명사의 로마자표기 실태는 로마자표기법의 준수 여부를 논할 때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견해(김선철.2012)도 제기되어 있는 등 표기의 혼선을 바라보는 입장이 매우 다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어규범의 존재는 그것을 통해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동일한 언어사용을 유지하여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것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어떤 규범이든 절대적으로 완벽한 규범이란 있을 수 없다. 규범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만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의 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규범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나 개정 등의 논의도 궁극적으로는 규범을 만든 주체의 입장이 아니라 그 규범을 사용해야 하는 대중을 중심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본 발표는 로마자표기법이 갖고 있는 규범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로마자표기법의 정착을 위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2. 로마자표기의 규범적 성격

2.1. 로마자표기법의 규범으로서의 위상

언어규범은 왜 필요한가? 특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로마자 표기와 관련한 규범은 왜 필요한가? 언어를 구성하는 최대 단위를 민족이라고 한정하는 경우에도 이들 민족이 생활하는 지역과 환경 그리고 구성원간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언어는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양상을 방지할 경우 자칫하면 동일 언어 구성체 내부에서조차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어 사용에 관계되는 시간적 조건과 지역적 조건 그리고 사회적 조건이라고 하는 세 조건을 각각 공통되게 아우르는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어문규범이라고 한다. 결국 어문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이 동일한 언어 형태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모두 4가지의 어문규범을 가지고 있다. 어문규범이 공식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국어심의회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때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어심의회 규정은 1964년 11월 처음 제정된 뒤 이후 총 5번의 개정을 거치다가 199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이 이 규정을 흡수하여 개정되면서 1995년 7월 13일 폐지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분이었던 어문규범 관련 내용은 다시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어기본법으로 옮겨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규정과 법률에 나타난 어문규범 관련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특히 우리의 논의 대상인 로마자표기법과 관련된 사항을 유의해서 보도록 하자.

1964년에 제정된 국어심의회규정이 마련될 당시 이 심의회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심의회 의 직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한글문제에 관한 사항.
2. 한자문제에 관한 사항.
3. 학술용어문제에 관한 사항.
4. 외래어 한글표기법에 관한 사항.
5. 한글 외래어표기법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교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에 따르면 한글과 한자 문제, 외래어 문제 등에 관해 국어심의회가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로마자표기는 공식적인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마자표기법이 처음으로 법률적 대우를 받게 된 것은 1995년에 이르러서이다.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이전의 국어심의회 규정을 바탕으로 <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을 신설하였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 어문규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로마자표기법 또한 공식적인 어문규범으로 등장한다.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

제7조 (어문규범) ① 국가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이하 "어문규범"이라 한다)을 국어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여기서 언급한 국어의 4가지 어문규범은¹⁾ 그 후 2005년의 국어기본법에도 그대로 이어지

고 있다. 1995년이던 이미 대한민국 정부가 고시한 세 번째 로마자표기법이 시행되고 있을 시점이었다.²⁾ 그럼에도 이 시기에 와서야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적 위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로마자표기법에 대해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가가 통치행위의 기본 요건인 법률을 통해 어문규범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이러한 규범의 필요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가 어문정책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이 근대적 국민국가가 언어 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근거이자 동력이기 때문이다. (조태린, 2009)

물론 법률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로마자표기법의 위상이 낮았다고 하는 견해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실생활에서 로마자표기가 갖는 실용적 측면과 관련하여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과연 우리가 로마자표기를 어느 곳에 그리고 얼마나 사용하는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언어에 대한 논의에서, 공공언어의 특성이나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들을 다룬 여러 연구들은 대부분 로마자표기법을 분석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³⁾ 이들 분석 기준에 포함되는 어문규범은 한글맞춤법이나 표준어규정이 가장 많이 포함되고 외래어표기법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소수이나 나타난다.

로마자표기법을 공공언어의 분석기준에 처음 포함시킨 연구는 민현식(2010)이다. 민현식(2010)은 공공언어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항목을 설정하면서 로마자표기법의 준수 여부도 표기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항목에 포함시켰다.⁴⁾ 그러나 실제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외래어표기에 대한 사례 분석은 나타나나 로마자표기를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민현식(2010)도 이론적으로는 로마자표기를 공공언어에 포함시킨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했다.

민현식(2010)은 공공언어의 개념을 “공공기관에서 해당 업무자가 사회구성원(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생산한 문어텍스트”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따르면 언어행위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은 ‘문어텍스트’이고 생산자는 ‘공공기관 해당업무자’, 수용자는 ‘사회구성원’이다. 그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네가지 유형으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공’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조태린(2010)의 정의는 훨씬 광범위하다. 그는 공공언어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

1) 어문규범의 법적 위상은 법령의 하위 단계인 ‘고시’이다. ‘고시’는 행정부에서 결정하여 공고한 것이다. 현행 어문규범의 고시 주체와 일자는 다음과 같다.

가. ‘한글 맞춤법’ 문교부 고시 제88-1호(1988년 1월 19일)

나. ‘표준어 규정’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년 1월 19일)

다. ‘외래어 표기법’ 문교부 고시 제85-11호(1986년 1월 7일)

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 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년 7월 7일)

2) 주지하다시피 우리 정부의 로마자표기법은 다음과 같이 4번에 걸쳐 제정·개정되었다.

제정 : 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1948)

1차개정 : 한글의 로마자표기법(1959)

2차개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1984)

3차개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2000)

3) 서정목(1991), 장소원 외(2000), 김문오(2001), 박경현(2002,2007), 정희원(2003), 조태린(2006,2010), 민현식외(2009) 등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4) 민현식(2010.)에 제시된 진단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 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기관이나 단체의 특성에 국한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환경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공공 언어의 사회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문규범은 개인 간의 언어사용을 규제하기도 하지만 좀더 본질적 기능은 사회적 관련성 속에서 그 기능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할 때 로마자표기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언어에 포함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제 공공언어에서 로마자표기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로마자표기가 그리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는 규범인 로마자표기법 또한 그리 중요한 규범이 아니라는 견해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규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로마자표기는 분명 우리 사회에서 상존하는 언어행위이고 표기가 미치는 국내·국외적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어와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물론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방법은 통역과 번역이다. 대부분의 정보는 이를 통하여 전달된다. 그런데 고유명사의 경우 통역과 번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로 전달하여 줄 수 밖에 없다. 결국 로마자표기법은 한국어, 특히 한국의 고유명사를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로마자로 적기 위한 규범이므로 비록 그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국인과 교류가 일상이 되어가는 사회적 추이 속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2. 로마자표기법은 누구를 위한 규범인가?

규범이란 특정한 행위에 대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행위의 기준이나 규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개입하여 양측의 공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과도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속으로 내재화 되기도

영역	요소	항목
1. 정확성	1.1 표기의 정확성	1.1.1. 한글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을 지켰는가?
		1.1.2. 띄어쓰기를 잘 하였는가?
		1.1.3. 외래어 및 로마자표기법을 잘 지켰는가?
	1.2. 표현의 정확성	1.2.1. 어휘를 의미에 맞게 선택하였는가?
		1.2.2. 문장을 어법에 맞게 사용하였는가?
		1.2.3. 문장을 우리말답게 표현하였는가?
2. 소통성 (가중치 기준)	2.1. 공공성 (생산자 중심)	2.1.1. 공공언어로서의 품격을 갖추었는가?
		2.1.2. 고압적·권위적 표현을 삼갔는가?
		2.1.3. 차별적 표현을 삼갔는가?
	2.2. 정보성 (텍스트 중심)	2.2.1. 정보의 형식이 적절한가?
		2.2.2. 정보의 양이 적절한가?
		2.2.3. 정보의 구성이 적절한가?
	2.3. 용이성 (이용자 중심)	2.3.1. 문장을 적절한 길이로 작성하였는가?
		2.3.2. 쉽고 친숙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였는가?
		2.3.3. 시각적 편의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하고, 실제적인 수단에 의하여 강제되기도 한다.⁵⁾ 규범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행위에는 반드시 행위자와 그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자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와 그 행위를 수행하는 매체, 그리고 행위가 실재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언어규범은 언어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규범이다. 언어규범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로마자표기법은 다른 언어규범과 두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하나는 행위자와 수용자의 비동질성이다.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 그리고 외래어표기법의 행위자 즉 표기자와 수용자는 모두 한국인이다. 이들 가운데 로마자표기와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표기가 외래어표기이다. 그런데 외래어표기가 해당 외국어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한국인 사이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는 않는다.⁶⁾

반면 로마자표기의 표기자는 한국인이고 수용자는 외국인이다. 한국인끼리는 굳이 로마자를 이용하여 표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로마자표기는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로마자표기의 중요한 원칙인 표기를 통한 한국어 발음의 환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이 해당 표기를 통해 한국어 화자와 가장 유사한 한국어 발음을 구현해 낼 수 있도록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론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외국어의 특성에 맞는 로마자표기법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국어표기이지 로마자표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특정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많은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다양한 외국인에게서 달리 발음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고려에 의하여 수용자인 외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표기법만을 규정하고 있다. (정경일. 2010) 여기에 로마자표기법이 갖는 규범으로서의 난제가 놓여 있다.⁷⁾

표기자와 수용자가 이질적인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표기법을 만들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한국인 중심으로 만들어졌다.⁸⁾ 이는 문자의 사용에서 이차적 행위자인 수용자 즉 독자보다는 일차적 행위자인 표기자의 입장과, 표기 대상이 국어라는 점에서 국어의 사용자 입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 위주의 표기법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

5)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의 근거는 권위, 이성, 이익, 합의, 일상성, 가치, 힘 등이다. 따라서 규범은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당위적 구속성의 근원을 발견하여 그것으로부터 규범을 설명하는 선형적 접근이며 또 다른 하나는 행위자가 규범에 복종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행위적 접근이다. (장준호.2006)

6) 최근 외국어의 정확한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어 학습은 물론 외국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어를 외래어표기법이 아닌 정확한 외국어 발음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개념규정의 혼선으로 빚어지는 오해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한국어 체계에 동화된 외래어를 대상으로 하는 표기법이다.

7) 현재 지구상에 로마자를 공식적으로 자국의 표기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역과 인구는 2010년 3월 현재 246개 지역 또는 국가에 걸쳐 60개 정도의 언어에 이르는 것으로 그 인구는 26억명 가까이 추정되고 있다. 채택 언어 수에서 2위를 차지한 키릴문자(Cyrillic) 문자와 49개의 차이를 보였고, 지역 또는 국가수에서는 31개로 2위를 차지한 아랍문자(Arabic)의 8배 가까이 되는 수치를 기록한다.(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 위의 설명은 로마자를 표기문자로 사용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 매우 넓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전세계 약 63억여명의 인구 가운데 로마자를 사용하지 않는 인구가 훨씬 더 많음을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결국 로마자 표기가 모든 외국인을 위한 최선의 표기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8) 역대 로마자표기법 가운데 한글을 대상으로 하고 문자 변환 위주의 전자법을 채택한 1959년의 ‘한글의 로마자표기법’도 한국인 위주의 표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해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외국인들의 42.7%만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들을 언어권별로 나누어보면 영어권의 65.0%, 기타 로마자 사용권의 69.0%, 비로마자 사용권의 45.0%가 불편하지 않다고 답변하여 현행 로마자표기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한 조사에서 한국인들의 응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자. 로마자표기의 사용편리성에서 한국인 전문가들은 65.0%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그 중 51.0%는 적기와 읽기 둘 다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경우는 불편하다는 응답이 42.5%였고, 그 중 41.2%가 적기와 읽기 두 부분 다 불편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소위 전문가보다 오히려 일반인의 사용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보면 우리 사회의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만족도는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현재와 같이 표기자 우선의 로마자표기법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3. 로마자인가? 영문자인가?

로마자표기법과 여타 어문규범 사이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차이는 표기매체인 문자이다. 즉 여타 어문규범은 모두 한글을 매체로 활용한다. 그러나 로마자표기법은 표기수단으로 로마자를 사용한다. 한글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한국어의 표기매체로 공인한 문자이다.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글의 한국어 표기수단으로서의 매체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로마자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 사회가 로마자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가가 이 논의의 초점이다. 로마자는 그 하위에 매우 다양한 문자체계를 포괄하고 있다.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도 자신들의 음소적 특성에 맞춰 다양한 특수 부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동일한 형태의 알파벳이라 하더라도 언어권에 따라서 그 발음은 늘 동일하지 않다. 다양한 로마자 가운데 가장 단순화된 형태가 영어를 표기하는 영문자이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다양한 로마자 가운데 영문자와 가장 유사하다.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정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로마자표기법의 다음 규정 때문이다.

제1장 표기의 기본원칙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⁹⁾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로마자 이외의 부호’란 용어는 매우 모호하다. 실제로 이 규정의 작성자들은 알파벳에 부가되는 특수부호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à, á, â, ã, ä, å 등을 비롯한 특수부호 사용 문자는 로마자인가? 아닌가? 이들도 분명 로마자의 한 종류이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아무튼 우리 사회는 위의 규정에 의하여 매우 단순화된 형태의 영문자만을 로마자로 인식하게

9) 이 규정은 1984년에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표기법에서는 알파벳 이외의 특수부호로 ‘ˆ’(breve), ‘’’(apostrophe), ‘-’(hyphen)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표기법에는 ‘-’(hyphen)만이 발음의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므로 2항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꾸준히 로마자표기법을 아예 영문자표기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우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규정에도 로마자표기와 함께 영문 또는 영어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 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정경일, 2006, 2011ㄴ).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로마자로 적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¹⁰⁾ 필자 역시 특정 문자를 지정하는 방식의 영문자표기법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로마자’라고 하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표기문자에 대해 이것이 과연 얼마나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이미 대중은 오래전부터 로마자표기가 아닌 영문자표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왜 영문자가 아닌 로마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로마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2.4. 로마자표기의 원리는 무엇인가?

로마자표기법의 목적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표기를 통하여 한국어 발음을 정확히 환원하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자로서 한글을 정확히 환원하도록 하는 것인가?

발음의 정확성을 위함이라면 표기의 원리는 轉寫法(Transcription)이 될 것이고, 문자의 정확성을 위함이라면 轉字法(Transliteration)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원리는 지속적으로 충돌하여 왔고 우리 로마자표기법이 짧은 시간 동안 잦은 개정을 겪었던 것도 결국은 이 두가지 원리 사이의 갈등에 의함이었다.

이 두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표기의 원리로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결국 로마자표기를 통해 우리가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로마자표기법이 구어적 규범인가 아니면 문어적 규범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왜냐하면 전자법은 문자와 문자의 대응을 위주로 하므로 구어로서의 기능보다는 문어적 기능을 위주로 한다. 이러한 기능은 외국 도서관등에서 한국 관련 도서나 문서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행 표기법은 전자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구어에서 의사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전자법에 의한 발음의 복원이 완벽할 수는 없다.¹¹⁾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자법에 비해 구어에서는 어떤 한국어 고유명사를 가리키는지 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표기법(이홍식, 2011)이다. 나아가 전자법의 문어적 기능이 전자법보다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표기자인 한국인의 입장이 더욱 강조된 견해이다. 문어적 전자법 표기를 통해 문자와 문자의 환원을 주목하는 것은 어쩌면 외국인의 시선이 아니라 한국인의 시선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법적 원칙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5. 로마자표기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민현식(2003)의 지적대로 현행 언어규범은 그 대상이 단어에 국한되어 있다.¹²⁾ 어문규범

10) 최근의 주장으로 이홍식(2011), 김선철(2012)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11) 로마자표기를 통한 한국어 발음의 환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은영(2007),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12) 민현식(2003)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규범이 문장 차원이 아니라 단어 차원에 머물고 있고 단어들

에서는 단어의 범주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언어규범은 그 적용대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한글맞춤법과 표준어규정은 한국어의 모든 단어를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은 그 대상이 다소 다르다. 명사를 제외한 동사나 형용사 등의 서술어나 기타 수식어들의 경우 이들은 번역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지 표기의 범주에서 논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사의 경우 고유명사와 달리 일반명사는 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표기법의 적용 대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즉 외래어표기법은 일반명사도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로마자표기법은 오직 고유명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¹³⁾

고유명사 가운데에서도 단어의 성격에 따라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해야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로마자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유명사는 인명, 지명, 단체명, 문화재명 등이다. 발표자는 이미 이들을 구분하여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피력한 바 있다.¹⁴⁾ 김선철(2012)도 발표자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개인과 단체명의 경우 그것이 생성된 시기에 따른 전통성과 역사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나아가 인명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사적인 영역의 표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헌법이 표방하는 행복추구권에 합당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¹⁵⁾

그러나 로마자표기법의 적용 대상을 지명과 문화재명 등 공공적 성격의 고유명사로만 국한할 경우 과연 이러한 규범의 존치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표기상 불일치로 인한 수용자의 혼란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공론이 필요하다.

3. 규범의 정착을 위한 논의

3.1. 진흥정책의 개발

이 모여서 이루는 문장 차원의 규범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국어 문장 교육에 애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문장의 규범을 보여주는 문법규범이 국어 구조 지식의 설명서 수준을 넘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 고려할 때 문장규범의 필요성이 논의될 수는 있다고 생각되나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과거 우리는 규범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지만 ‘** 문장백과’라거나 이와 유사한 제목을 가진 모범적인 글쓰기 책들을 사용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서적들은 일정한 형식을 지닌 글에 대한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권장하는 문장의 본보기를 제공하는 것이었을 뿐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또 문장의 생산성과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문장을 규제하는 규범이 가능한 것인지는 역시 회의적이다. 문장을 제어하는 규범의 범위를 문법이라고 한정한다면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13) 따라서 김선철(2012:14-15)이 로마자표기법이 지명 등 표기대상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잉여적이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14) 정경일(2011-)은 지명과 문화재명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닌 대상은 규범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되 인명과 단체명 등 사적인 성격의 대상은 표기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설명 표기가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 2009년 6월 개최된 성씨로마자표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진현용(외교통상부 여권과)은 개인 이름의 영문표기 시 특정한 표기를 강제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현행 로마자표기법이 고시된 직후인 2000년 9월, 김복문은 새로이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이 실용성이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하였다.(헌법재판소,2000). 어문규범과 관련하여 이를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위헌심판을 청구한 사례로는 표준어규정을 문제삼았던 경우도 있었다.(헌법재판소, 2009)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두가지 위헌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언어규범은 언어정책적 차원에서 국가가 제정하고 시행하는 공적인 규범이다. 그러므로 조태린(2006)의 견해처럼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의 준수를 강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법과 달리 언어규범을 정의하고 있는 국어기본법은 그 자체에 법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언어정책적 차원에서 언어규범의 강제적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¹⁶⁾ 그러나 언어규범의 강제적 규제가 과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 강하다.

그러므로 로마자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의 준수를 위해서는 법률에 의한 강제규제보다는 이의 사용을 늘여나가기 위한 진흥정책을 펴는 것이 더 유효하다. 특히 단순히 교육과 홍보의 확대를 통한 진흥보다는 어문규범을 정확히 준수하였을 경우 이를 포상하고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의 진흥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로마자표기와 관련한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인명표기이다. 주지하다시피 인명표기는 표기법이 고시된 시점부터 근원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기법의 3장 4항 (1)은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표준발음에 따라 적고, 발음시 나타나는 음운변화를 반영하기로 한 원칙의¹⁷⁾ 예외를 인정하였고, 3장 4항 (2)는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고 하여 표기규정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와 관련하여 정부는 13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도 성씨 표기 규정을 따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¹⁸⁾

우리 국민들이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여권과 신용카드의 발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 그렇다면 여권이나 신용카드의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 로마자표기법의 규정에 맞게 인명을 표기하는 경우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상표 또는 상호의 등록 시에도 이와같은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²⁰⁾ 단체나 학교, 기관의 명칭을 새로이 정하여 등록할 때도 표기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공적인 도로표지판관 각종 안내판의 로마자표기 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포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6) 송기형(2005)은 ‘국어기본법’을 ‘프랑스어 사용법’과 비교하면서 “국어 사용 유해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된다면 인위적인 규제 또는 처벌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 바 있다. 조태린(2009)도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지향하는 바를 지원하고 장려하며 지양하고자 하는 바를 억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의 강제력을 동원”하고자 한다고 하여 강제력의 사용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이 두가지 논의는 그 대상을 국어기본법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나 하나 언어규범으로 국한하여 이해해도 그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로마자표기법에 대해서도 업익상(2011)은 “새로 태어나거나 처음여권을 만드는 사람부터라도 국가에서 제정한 방법으로 로마자 표기를 하도록 강제해야 30여년 세월이 지나면 표기법이 정착될 것이다. 그런 강제 규정 없이는 규정은 규정으로만 남고 사람들은 여전히 제 마음대로 영문이름을 표기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

17)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8) 이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2001년 6월에 1차 시안을 발표하고 2009년 6월 앞의 시안을 보완한 시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만한 표기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상억(2011)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성씨의 로마자 표기정책 마련 연구를 수행하여 3개의 권장안을 제시한 바 있다.

19) 설문조사 결과 여권- 41%, 신용카드-20%로 나타났다. (이상억,2011)

20) 정부에서 제정한 옥외 광고물이나 도로표지 등과 관련한 여러 규정에는 각종 표기에 로마자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상호나 상표를 관장하는 상표법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경일,2011)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기관이나 공적 단체가 아닌 사적인 개인이나 단체 등은 일단 자신들이 표기한 방식을 표기법이 바뀌었다 해도 쉽사리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²¹⁾ 그러므로 로마자표기법을 국가 규범으로 확립하고자 한다면 이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진흥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3.2. 규범의 정비

현행 로마자표기법은 규범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완전하다. 많은 논의들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표준발음에 의한 표기를 지향하면서도 체언에서 격음으로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다거나, 이름의 음운변화는 인정하지 않고, 성의 표기를 따로 정하기로 하며,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의 표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원칙을 벗어난 예외가 등장한다. 이로 인해 이를 사용해야 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용이하지 않고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할 부분에도 적용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띄어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명표기의 경우 지나치게 길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시각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사실은 표기법 전체에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용해 온 다양한 로마자표기법의 영향을 받은, 또는 이를 무시한 표기자의 임의로 생성된 관습적 표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의 논의처럼 강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범을 정비하는 것도 논의해 보아야 한다. 정비의 방향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중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성씨 표기에 관해 이상억(2011)이 3개의 권장안을 만들어 공론에 부친 것을 참조해 볼 수 있다.

4. 결론

본 발표는 국어의 4대 어문규범 가운데 하나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에 관해 그 규범적 위상을 비롯한 몇가지 문제들과 사회적 정착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 보았다. 공적 규범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적 입장에서 볼 때 로마자표기법을 둘러 싸고 있는 현실은 매우 부정적이다.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발표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강남옥, 박재현(2011). 「공공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2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 로마자표기법 제3장 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사적 영역의 관습표기가 용인되고 로마자표기법은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대폭 약화되고 말았다.

- 『인문연구』.62.123-156.
- 권재일(2009).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국어교육』.129. 한국어교육학회.
- 김문오(2001).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김선철(2012). 「국어의 로마자표기법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한국어학』.56. 한국어학회.1-28.
- 민현식(2003). 「언어 규범 정책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 7-71
- 민현식 외(2009). 「공공기관 서식·문서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 민현식(2010). 「공공언어 요건 정립 및 진단 기준 개발 연구」. 국립국어원
- 박경현(2002). 「공공 게시물의 언어」. 이석주 외 『대중매체와 언어』. 역락. 101-144
- 박경현(2007). 「국어 생활과 문법 교육」. 이석주 외 『언어학과 문법 교육』.역락. 335-375
- 박재현, 이관희, 김승현(2011). 「공공언어에 대한 요건별, 장르별 만족도」. 『사회언어학』.19-2. 사회언어학회.177-207
- 서정목(1991).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 국립국어원
- 송기형(2005). 「국어 기본법과 프랑스어 사용법의 비교 연구」. 『한글』. 269. 한글학회. 189-218.
- 엄익상(2011). 「로마자표기법:국내표준과 국제표준」.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 국어정책 연속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1-10
- 이상억(2011). 「성씨의 로마자 표기 정책 마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은영(2007). 「로마자 표기에 대한 외국인 발음 분석」. 국립국어원
- 이홍식(2011).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어문연구』 39-4. 어문연구학회. 113-136
- 장소원 외(2000). 「이런 말 실수 저런 글 실수」. 문화관광부
- 장준호(2006). 「국제규범의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국제정치논총』.46-1. 한국국제정치학회. 31-53.
- 정경일(2006). 「지명과 도로명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한국어학』.33. 한국어학회. 309-331.
- 정경일(2011ㄱ). 「번역표기의 일관성과 로마자표기」. 『어문논집』.63. 민족어문학회.59-75
- 정경일(2011ㄴ). 「로마자표기법의 연구 성과와 대중화의 과제」. 『어문학』.114. 한국어문학회. 175-206.
- 정희원(2003). 「어문규범 실태 조사 IV」. 국립국어원
- 조태린(2009). 「언어 정책에서 법적 규정의 의미와 한계」. 『한말연구』. 24. 한말연구 학회. 241-265
- 조태린(2010). 「공공언어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식」. 『한말연구』.27. 한말연구학회. 379-405
- 한글학회·현대경제연구원(2010).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영향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헌법재판소(2000). 「2000헌마573. 문화관광부고시 2000-8호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위헌 확인」
- 헌법재판소(2009). 「2006헌마618. 표준어 규정 제1장 제1항 등 위헌 확인」

발표자: 정경일

소속기관: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연락처: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e-mail: kijung@konyang.ac.kr